

1. 개정이유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서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과격하고 부정적인 의미인 퇴치로 표현하고 있어, 조류가 항공안전을 위해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변경 추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퇴치' 용어를 '충돌예방'으로 변경(안 제6조, 제62~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라목 중 “퇴치업무”를 “충돌예방 업무”로 한다.

제62조제2항제7호 중 “퇴치”를 “충돌예방”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퇴치”를 “충돌예방”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책임을 가진다.

1. ~ 6. (생략)

7. 야생동물 퇴치 물품의 원활한 공급

8. ~ 11. (생략)

제63조(결론) ①·② (생략)

③ 야생동물 퇴치 방법을 선택할 때, 공항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야생동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

1. ~ 6. (현행과 같음)

7. ----- 충돌예방 -----

8. ~ 11. (현행과 같음)

제63조(결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충돌예방 -----

-----.